

의안번호	2211194
의 퇴 인	권영진 의원
회 답 일	2025. 7. 2.
추 계 번호	25F35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
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, 2027년 205억원, 2037년 101억원 등 2027년부터 2037년까지 11년간 총 6,057억원(연평균 55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본사 이전 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61조제3항): 2027~2031년까지 5년간 총 22억원 감소
 -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1항): 2027~2037년까지 11년간 총 4,680억원 감소
 -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의2제1항): 2027~2037년까지 11년간 총 1,355억원 감소
 -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은 최대 7년(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) 동안 적용되어, 2030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7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·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'27	'28	'29	'30	'31	'32	
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61조제3항)	-4.4	-4.4	-4.4	-4.4	-4.4	-	
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1항)	-156	-312	-468	-624	-780	-702	
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의2제1항)	-45	-90	-135	-180	-225	-203	
계	-205	-406	-607	-808	-1,009	-905	

	'33	'34	'35	'36	'37	누적	연평균
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61조제3항)	-	-	-	-	-	-22	-2
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1항)	-624	-468	-312	-156	-78	-4,680	-425
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의2제1항)	-181	-136	-91	-46	-23	-1,355	-123
계	-805	-604	-403	-202	-101	-6,057	-551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1조제3항 (법인 본사를 수도권과 밀역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 수도권과밀역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30.12.31.	
2	안 제63조제1항 (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 수도권과밀역제권역에서 3년(중소기업은 2년)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- 감면율 ① 수도권 내(중소기업한정), 수도권 연접지역, 지방광역시, 대도시: 5년 100% + 2년 50% ②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(위기지역,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), 기타지역: 7년 100% + 3년 50% ③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: 10년 100% + 2년 50%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30.12.31.	
3	안 제63조의2제1항 (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 수도권과밀역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- 감면율 ① 수도권 연접지역, 지방광역시, 대도시: 5년 100% + 2년 50% ②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(위기지역,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), 기타지역: 7년 100% + 3년 50% ③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: 10년 100% + 2년 50%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30.12.31.	
4	안 제121조의17(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○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 신설 - (감면대상) 도심융합특구에 2030.12.31.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·이전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- (감면율) 특구 내 사업에서 발생소득에 대해 3년간 100%, 2년간 50% 세액감면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1조제3항 (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	
2	안 제63조제1항 (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	
3	안 제63조의2제1항 (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	
4	안 제121조의17(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X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규정 등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의 경우 이전지역별 감면기간을 감안하여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4년(2021~2024년)의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, 수도권 밖 본사 이전의 경우 2024년 감면액의 잠정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
 -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10년(7년 100% 감면, 3년 50% 감면)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
-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(5년 100% + 2년 50%)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공장 또는 본사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,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(7년 100% + 3년 50% 또는 10년 100% + 2년 50%)¹⁾은 고려하지 않음
 -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

□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61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개요)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, 5년 분할 익금산입 과세특례 적용

- 동 조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·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익금불산입하며, 이후 5년간 균등하게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
 - 다만, 본사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전하기 전·후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

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30년 12월 31일

□ (감면실적)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·소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2020~2024년(잠정) 법인세 감면액 평균: 4.4억원
- 소득세의 경우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발생하지 않음

1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

[표 2]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: 2020~2024년
(단위: 억원)

연도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 ¹⁾
계	3	2	5	7	5
법인세	3	2	5	7	5
소득세	-	-	-	-	-

주: 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

- (추계방법) 최근 5년(2020~2024년) 연평균 감면실적(4.4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적용기한 5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 -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(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)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
 - 소득세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없으므로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
- (추계결과)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4.4억원, 2031년 4.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22.0억원(연평균 4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'27	'28	'29	'30	'31	누적	연평균
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61조제3항)	-4.4	-4.4	-4.4	-4.4	-4.4	-22.0	-4.4

나.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개요)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·소득세 감면

- 감면요건: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(중소기업은 2년) 계속하여 공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
 -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은 2020년까지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었으나, 2021년부터 일반 기업까지 확대
 -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됨
- 감면내용: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동안 법인·소득세 감면
 - 수도권 내(중소기업한정), 수도권 연접지역, 지방광역시, 대도시: 5년 100% + 2년 50%
 -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(위기지역,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), 기타지역 : 7년 100% + 3년 50%
 -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: 10년 100% + 2년 50%
 - 단, 2022년까지는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% 감면, 이후 3년간 50% 감면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)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
→ (개정안)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

□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상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2021년부터 일반기업까지 확대되었으므로 2021년 이후의 실적을 살펴봄
- 2021~2024년(잠정) 법인세 감면액 평균: 1,092억원
- 2021~2024년(잠정) 소득세 감면액 평균: 240억원

[표 4]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실적: 2021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(잠정) ¹⁾
계	2,052	1,192	1,279	805
법인세	1,799	928	1,029	610
소득세	253	264	249	195

주: 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최근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액의 평균을 바탕으로,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각각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

○ (법인세) 1년 단위 환산액: 50% 감면액 64억원* + 100% 감면액 128억원**

* 64억원 = 1,092억원 ÷ 17 (7년 × 2 + 3년)

** 128억원 = 64억원 × 2

－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10년(7년 100% 감면, 3년 50% 감면)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
○ (소득세) 1년 단위 환산액: 50% 감면액 14억원* + 100% 감면액 28억원**

* 14억원 = 240억원 ÷ 17 (7년 × 2 + 3년)

** 28억원 = 14억원 × 2

○ 공장을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(5년 100% + 2년 50%)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－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공장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,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(7년 100% + 3년 50% 또는 10년 100% + 2년 50%)²⁾은 고려하지 않음

2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

[표 5] 연도별 법인·소득세 감면 예상액: 2027~2037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2026년 이전기업	-156	-156	-156	-156	-156	-78
2027년 이전기업		-156	-156	-156	-156	-156
2028년 이전기업			-156	-156	-156	-156
2029년 이전기업				-156	-156	-156
2030년 이전기업					-156	-156
계	-156	-312	-468	-624	-780	-702

구분	2033	2034	2035	2036	2037	누적	연평균
2026년 이전기업	-78						
2027년 이전기업	-78	-78					
2028년 이전기업	-156	-78	-78				
2029년 이전기업	-156	-156	-78	-78			
2030년 이전기업	-156	-156	-156	-78	-78		
계	-624	-468	-312	-156	-78	-4,680	-425

(3) 추계결과

-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법인·소득세는 2027년 156억원, 2037년 78억원 등 2027년에서 2037년까지 11년간 총 4,680억원(연평균 42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세액감면이 7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2030년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7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·소득세, 2027~2037년

(단위: 억원)

	'27	'28	'29	'30	'31	'32	
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1항)	-156	-312	-468	-624	-780	-702	
	'33	'34	'35	'36	'37	합계	연평균
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1항)	-624	-468	-312	-156	-78	-4,680	-425

다.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의2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개요)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

- 감면요건: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
 -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은 2020년까지 공장·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었으나, 2021년부터 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
- 감면내용: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
 - 수도권 연접지역, 지방광역시, 대도시: 5년 100% + 2년 50%
 -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(위기지역,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), 기타지역 : 7년 100% + 3년 50%
 -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: 10년 100% + 2년 50
 - 단, 2022년까지는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본사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% 감면, 이후 3년간 50% 감면(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)
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

→ (개정안)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

□ (감면실적)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실적은 2021년 기준 3,032억원, 2024년(잠정치) 38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

- 2021년부터 ‘공장·본사 이전’에서 ‘본사 이전’으로 조정되었으므로 2021년 이후의 실적을 살펴봄
-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면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임

[표 7]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: 2021~2024년

(단위: 억원)

연도	2021	2022	2023	2024(잠정) ¹⁾
감면액	3,032	2,993	727	383

주: 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감면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³⁾이므로 2024년 잠정치율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

- 1년 단위 환산액: 50% 감면액 23억원* + 100% 감면액 45억원**
 - * 23억원 = 383억원 ÷ 17 (7년 × 2 + 3년)
 - ** 45억원 = 23억원 × 2
- 본사를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(5년 100% + 2년 50%)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본사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,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(7년 100% + 3년 50% 또는 10년 100% + 2년 50%)⁴⁾은 고려하지 않음

3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르면 2025년 감면실적의 전망치 역시 401억원으로 2024년 잠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므로 2024년 잠정치를 기준으로 추계

4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

[표 8] 연도별 법인세 감면 예상액: 2027~2037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2026년 이전법인	-45	-45	-45	-45	-45	-23
2027년 이전법인		-45	-45	-45	-45	-45
2028년 이전법인			-45	-45	-45	-45
2029년 이전법인				-45	-45	-45
2030년 이전법인					-45	-45
계	-45	-90	-135	-180	-225	-203

구분	2033	2034	2035	2036	2037	누적	연평균
2026년 이전법인	-23						
2027년 이전법인	-23	-23					
2028년 이전법인	-45	-23	-23				
2029년 이전법인	-45	-45	-23	-23			
2030년 이전법인	-45	-45	-45	-23	-23		
계	-181	-136	-91	-46	-23	-1,355	-123

(3) 추계결과

-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45억원, 2037년 23억원 등 2027년에서 2037년까지 11년간 총 1,355억원(연평균 12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세액감면이 7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2030년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7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7년

(단위: 억원)

	'27	'28	'29	'30	'31	'32
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63조의2제1항)	-45	-90	-135	-180	-225	-203

	'33	'34	'35	'36	'37	합계	연평균
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63조의2제1항)	-181	-136	-91	-46	-23	-1,355	-123

라. 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(안 제121조의17)

□ 개정안은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,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-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·주거·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5)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구역을 의미
-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대전광역시,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 등 5개 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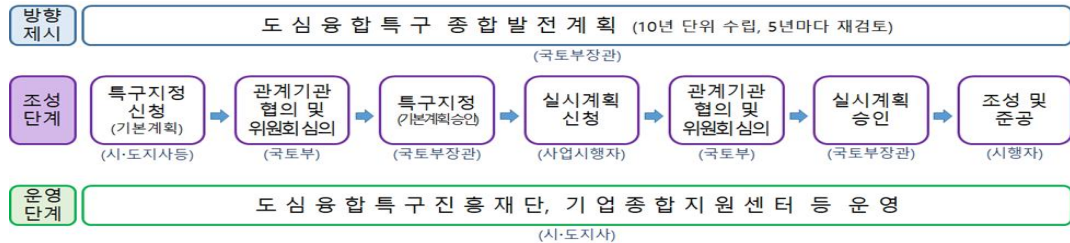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특구 내 창업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망하여야 하지만, 현재로서는 도심융합특구 내 외국인투자 규모 및 발생 소득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는 다음과 같음
 - － 기본계획 수립(시·도지사등) → 기본계획 승인, 지구 지정(국토교통부장관) → 실시계획

5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은 도심융합특구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,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

획 수립(시행자) → 실시계획 승인(국토교통부장관)

[그림 1]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운영 절차

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그러나 2024년 11월 정부가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한 후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실시계획 용역을 수립에 착수하는 단계로서 향후 실제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
 - 각 지자체별로 본격적인 후속 행정절차 이행의 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 존재
-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 및 외국인투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함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